###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49

발의연월일: 2024. 8. 14.

발 의 자:김현정·전재수·박균택

박정현 • 조인철 • 이건태

김종민 · 복기왕 · 허성무

양문석 · 김문수 · 김기표

권향엽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기한을 각각 40일과 60일로 명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판매대금 지급기한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간 거래정산금 지급기한과 거래정산금의 보호와 안정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은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됨. 이에 따라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 거래정산금 관련 규정에 대한 법적 미비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있음.

미정산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티메프 미정산 사태는 6만명에 이르는 입점 판매자들의 연쇄 도산을 부추기고

있으며, 5,6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긴급자금 투입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의 거래정산금 지급기한을 소비자가 해당 상품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거래정산금을 은행에 예치·신탁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미정산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의4, 제20조의5 신설 등).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본문 중 "말한다"를 "말한다(제4호에 따른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하여 통신판매를 대행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사이버몰"을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서비스"로, "거래할"을 "공급하거나 거래할"로, "허락하거나"를 "제공하거나"로, "알선하는"을 "알선 또는 대행하는"으로 한다.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거래정산금 등의 지급)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아 판매한 재화등의 거래정산금(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입점받은 재화등의 판매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수수료 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거래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정산금 또는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0조의5(거래정산금의 보호)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정산금의 100 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거래정산금관리기관" 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 1. 신탁
  - 2. 예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한 거래정산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거래정산금을 별도관리하는 거래정산금관리기관과 거래정산금을 직접 운용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 ④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거래정산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상계 또

- 는 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통신판매중개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거래정산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거래정산금관리기관은 통신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거래정산금을 통신판매중 개의뢰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 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 판매중개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는 거래정산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⑨ 거래정산금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거래정산금을 통신판매중개자

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래정산금을 제1항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 ① 거래정산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거래정산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거래정산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1.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① 거래정산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의 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거래정산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③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거래정산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거래정산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밖에 거래정

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제1항제1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0조의4, 제20조의5제1항,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래정산금의 지급 및 보호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4 및 제20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 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재화등을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	2
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	
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	
(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	
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u>말한</u>	<u>말한</u>
<u>다</u> . 다만, 「방문판매 등에 관	다(제4호에 따른 온라인 전자
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거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하
전화권유판매는 통신판매의	여 통신판매를 대행하는 행위
범위에서 제외한다.	<u>는 제외한다)</u>
	<b></b>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통신판매중개"란 사이버몰	4 <u>온라인</u>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u>거래할</u>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u>허락하거나</u> 그 밖에 총리렁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6. (생략) <신 설>

전자상거래 플랫폼 서비스
<u>거래할</u>
<u>제공하거나</u>
<u>알선 또는 대행하는</u>

5. · 6.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거래정산금 등의 지급)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판매중개를 의뢰받아 판매한 재화등의 거래정산금(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입점받은 재화등의 판매금액으로서 대금결제, 양도, 환급, 수수료등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비자가 해당 재화등의 구매를 확정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가 제1항에

<신 설>

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통신 판매중개의뢰자에게 재화등의 거래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 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 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 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화등의 거래정 산금 또는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의5(거래정산금의 보호)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거래정산금의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은행 등 대통령 경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이하 "거래정산금관리기관"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라 한다) 하여야 한다.

- 1. 신탁
- 2. 예치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지급보증보험
- 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제3 호에 따라 지급보증보험을 가 입한 거래정산금을 직접 운용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거래정산금을 별도관리하는 거래정산금관리 기관과 거래정산금을 직접 운 용하는 통신판매중개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한 방법 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운용하 여야 한다.
- ④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거래정산금이 판매된 재화등을 제공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별 도관리하는 재화 등의 대금을 상계 또는 압류(가압류를 포함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통신판매중개자는 합병 또는 영업양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별도관리하는 거래정산금 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① 거래정산금관리기관은 통신 판매중개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는 별도관리하는 거래정산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구에 따라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청 구 방법 등 필요한 절차에 대 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2.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4. 제32조제4항에 따라 영업의전부에 대한 정지명령을 받은경우
-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경우

- ⑧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자 등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거래정산금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⑨ 거래정산금관리기관은 그 관리기관이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도관리하는 거래정산금을 통 신판매중개자에게 우선 지급하 여야 한다. 이 경우 통신판매중 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거래정산금을 제1항 에 따라 다른 관리기관을 통하 여 별도관리하여야 한다.
- ① 거래정산금을 별도관리한 통신판매중개자는 관리기관이 제7항에 따라 거래정산금을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거래정산금관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 통신판매중개의뢰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 2.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게 지 급하여야 할 재화등의 대금에 관한 정보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정보로서 통신판매중 개의뢰자의 청구에 응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① 거래정산금에 관한 청구권을 가지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 그 청구권의 양수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등의 대금으로 별도관리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그 청구권에 관한 금액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조에 따른 거래정산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① 별도관리하여야 하는 거래 정산금의 범위 및 산정방법, 별 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거래정 산금 관리 상황 점검 방식, 그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공정거래 위원회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9조의2,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2조 제1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 및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제32조의2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

한다. 제32조(시정조치 등) ① -----제20조의4, 제20조의5 제1항, 제22조제1항-----2. • 3. (현행과 같음)

밖에 거래정산금의 관리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2. · 3. (생략)